

미국

법원, 계약에 따라 업무상저작물 창작 작업을 수행한 자는 이를 개작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김혜성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업무상저작물인 대본의 창작 행위를 실제로 수행한 다음 퇴사한 직원이 이를 개작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 하였다면 퇴사 이후 개작한 대본에 기초한 영화 제작으로 인하여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2019년 3월 20일 그 직원이 업무상저작물을 퇴사 이후에 개작한 대본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함.

④ 사실 관계

- Farhad Safinia(이하 ‘Safinia’)는 영화 ‘The Professor and the Madman’의 대본(이하 ‘영화 대본’) 2016년 버전의 저작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작가임.
 - 2016년 11월 14일 Safinia는 영화 대본의 2016년 버전 개작(이하 ‘2016년 버전 대본’)을 완성하고 자신을 저작권자로 하여 2017년 8월 4일 저작권 등록을 함.
 - 이 사건에서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바로 이 2016년 버전 대본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임.
- Safinia는 2007년 1월 8일 Airborne Productions, Inc(이하 ‘Airborne’)

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상저작물 작성 및 그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정한 Certificate of Authorship(이하 ‘COA’)를 체결함.

- Safinia는 Airborne에 고용되어 동명의 소설을 기초로 작성된 기존 ‘The Professor and the Madman’의 대본을 개작하여 2007년 버전 대본을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함.
- 대본, 아이디어, 캐릭터, 테마 플롯을 비롯한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결과물은 영화(motion picture) 또는 시청각 저작물(audio visual work)의 일부로 이용되기 위해 Airborne의 주문(order) 또는 의뢰(commission)에 의한 것으로 간주됨.
- 위 결과물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업무상저작물(work made for hire)에 해당함.
- Airborne이 위 결과물의 저작자(author)이고 결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가지며 해당 저작물을 변경하고 이용할 권리도 가짐.
- COA 체결 당시 당사자들은 해당 COA는 Safinia의 2007년 버전 대본 작성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할 의도였음.
- 이 COA 체결 후, Safinia는 2001년 버전 대본의 개작을 시작하여 2009년에야 2007년 버전 대본을 완성함.
- Airborne은 2016년 8월 21일 권리양도협정(Quitclaim Agreement)을 체결함.
 - Airborne은 Safinia가 2007년 1월 8일에 체결한 COA에 따라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인 ‘The Professor and the Madman’의 2007년 버전 대본을 영화화 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Definition Films DAC에게 양도함.
- Safinia는 영화제작사 Voltage Pictures, LLC(이하 ‘Voltage’), Definition Films DAC 등(이하 ‘Voltage 측’)과는 위와 같은 COA를 체결한 사실은 없음.

- Safinia는 Voltage 측이 ‘The Professor and the Madman’ 영화를 제작한 것은 저작권법 제106조가 보장하고 있는 2016년 버전 대본에 대한 자신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관련 규정 및 선례

- 업무상저작물이란 (1) 근로자가 고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저작물 또는 (2) 당사자들이 해당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로 하기로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영화 또는 그 밖의 시청각 저작물의 일부로 이용되기 위하여 특별히 주문 또는 의뢰된 저작물임(저작권법 제101조).
- 저작물이 고용주를 위해 작성된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저작자로 간주되며 당사자들이 서면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고용주가 저작권을 구성하는 모든 권리를 가짐(저작권법 제201조 제b항).
- 따라서 업무상저작물의 창작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 즉 근로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는 것이 제9순회항소법원의 확립된 선례임.

법원의 판단^{<1>}

- 2017년 8월 4일자 저작권 등록 기록에 의하여 Safinia가 2016년 버전 대본의 저작권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됨.
- 그러나 Safinia가 2007년 1월 8일 Airborne과 체결한 COA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Safinia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

<1> Safinia v. Voltage Pictures, LLC, CV 17-6902-CBM-RAO (C.D.Cal. Mar. 20, 2019)

이 된 2016년 버전 대본을 포함하여 Safinia가 영화 ‘The Professor and the Madman’와 관련하여 작성한 모든 저작물 등에 대하여 Safinia가 2007년 1월 8일 Airborne과 체결한 COA가 적용되는 것임은 COA의 문언상 명백함.

- 따라서 2016년 버전 대본 또한 COA가 적용되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함.
 - Safinia는 COA에 따라 Airborne이 특별히 주문 또는 의뢰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Voltage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대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COA에는 Safinia가 ‘The Professor and the Madman’의 영화화를 위하여 기존 대본을 개작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작성한 모든 대본, 아이디어, 캐릭터, 플롯 등이 Airborne이 특별히 주문 또는 의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
 - 그러므로 기존 대본을 기초로 작성된 2016년 버전 대본은 COA에 규정된 바대로 Airborne에 의해 특별히 주문 또는 의뢰된 것으로 간주됨.
- 이 사건의 당사자인 Safinia와 Voltage 측 사이에 COA가 체결된 바가 없다는 사실은 Safinia의 대본이 업무상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
- Safinia가 Airborne과 체결한 COA는 ‘Airborne이 Safinia가 영화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작성한 대본 등의 저작자(author)이자 그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가진 자(owner of all rights)로 간주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비록 Safinia와 Voltage 측 사이에 COA를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Airborne과 Safinia 사이에 체결한 COA에 따라 작성된 업무상저작물인 대본에 대하여 Safinia는 저작권을 가지지 않음.
 - 게다가 Voltage 측인 Definition Films DAC는 2016년 8월 21일 Airborne으로부터 Safinia가 COA에 따라 개작한 대본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 받음.
- Safinia는 COA는 2007년 버전 대본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Safinia와

Airborne은 2016년 버전과 같이 2007년 이후에 Safinia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의도하고 그렇게 이해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음.

- Airborne 대표이사 또한 Safinia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함.
- 그러나 COA의 명시적인 문구는 COA가 2007년 버전 개작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2007년 이후 Safinia가 작성한 장래의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COA를 Safinia의 주장대로 해석할 수 없음.
- Safinia는 2016년 버전 대본의 저작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은 것임.

평가

- 이 판결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상저작물 작성을 실제로 수행한 직원이 퇴사 이후에 그에 기초하여 작성한 저작물 또한 그 직원이 저작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 것임.

※ 참고 자료

<https://bit.ly/2Zf5XwY>

미국

연방검찰, 음란물의 저작권을 기화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다

유현우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미국 연방검찰은 2019년 3월 25일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에 BitTorrent, Pirate Bay 등과 같은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 저작권을 확보한 음란물을 미리 올리고 수천 명에 이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한 뒤에 음란물의 저작권을 기화로 무분별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를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합의금을 갈취한 악덕 변호사 Paul Hansmeier에게 1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함.

사실 관계

- 2010년 9월 저작권에 정통한 변호사 Paul Hansmeier는 또 다른 변호사이자 동업자 John L. Steele과 함께 자신들의 경험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Steele Hansmeier라는 명칭의 로펌을 설립하고 포르노 영화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한 개인 및 회사의 저작권 소송을 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나중에는 포르노 영화에 대한 저작권을 대량 확보하였음.
- Paul Hansmeier의 동생 Peter는 2011년 4월경부터 자신들이 저작권을 확보한 포르노 영화를 BitTorrent, Pirate Bay 등의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포르노 영화를 손쉽게 다운로드 받도록 유도하고 음란물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Paul Hansmeier와 John L. Steele(이하 ‘피고인들’)은 일말의 잠재적

인 법적 리스크를 탈피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이 탄로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1년 11월경 일리노이 주에 Prenda Law라는 명칭으로 또 다른 로펌을 설립하였고 2011년경부터는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원고의 역할을 할 AF Holdings LLC, Ingenuity 13 LLC, Guava LLC, LW Systems LLC 등을 포함한 은밀하게(surreptitiously) 통제된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였음.

- 이들은 2012년 5월경부터는 음란물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기 위해 포르노 제작 사업(porn production business)에 뛰어 들기도 하였음.
 - 시카고, 마이애미, 라스베가스 등지에서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성인 영화 배우들과 계약을 맺고 다수의 단편 포르노 영화를 제작하였음.
 - 영화 촬영 직후 피고인들은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인 Ingenuity 13 LLC에 "Five Fan Favorites", "Show at the Scenes Behind the Show" 등 포르노 영화의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하였음.
- 피고인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매입한 음란물의 저작권을 기화로 삼아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서 이를 다운로드 받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설립한 로펌의 이름으로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면서 포르노 영화를 다운로드 받거나 다운로드를 시도한 사람들의 IP 주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 특히 피고인들은 포르노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의 IP주소 및 포르노 영화 관련 구독자 정보(subscriber information)를 얻어내기 위해서 허위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소송 및 요청에 따라 초기 증거 개시·수집(early discovery)을 허가하고, IP 주소 및 관련 구독자 정보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소환할 수 있도록 승인함.
 -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침해된 콘텐츠를 다운

로드 한 사람의 IP주소 및 개인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이점을 악용한 두 변호사는 IP 주소 및 관련 구독자 정보를 입수한 뒤 음란물을 다운로드 한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합의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 소송은 물론이고 개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였음.
- 피고인들은 소송 과정 중에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피소당한 사람들에게 보통 3,000~4,000달러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면서 합의하기를 제안하였고, 이런 식으로 합의금 장사를 시도하여 최소 600만 달러 이상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벌어들였음.
- 또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내용의 편지 및 유선 전화 통화를 통해 만약 제시한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15만 달러에 이르는 법정손해배상금^{<1>} 등 엄청난 재정적 처벌과 함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실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일삼았음.
-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악랄한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였고, 평균 4,000달러(한화 약 480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였음.

<1> 미국 연방저작권법은 법정손해배상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선택에 따라서 실제 손해 및 이익에 갈음하여 저작물 1개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모든 침해로서 침해자 1인이 단독으로 책임을 지거나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행위에 대하여 750달러 이상 3만 달러 이하의 금액 중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정손해배상액에 따른 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침해행위가 고의로 행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재량으로 15만 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으며, 반대로 침해자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때에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200달러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오승중, “[판례평석]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과 관련된 미국 판례이론”, 대한변협신문, 2013년 5월 13일,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8748>>

- 이후 여러 법원이 동일한 저작권 소송물에 대해 여러 명(multiple individuals)을 상대로 고소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하자 피고인들은 그동안의 전략을 바꾸어서 2012년 10월경부터 ‘공모자(co-conspirators)’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IP 주소 및 관련 구독자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ISPs에 대한 소환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고자 ‘가짜 고객(sham clients)’들을 앞장세워 고객들의 컴퓨터 시스템이 해킹 당했다고 거짓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음.
- 피고인들은 이러한 ‘가짜 해킹(phony hacking)’ 소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발각된 일명 ‘계략 피고인(ruse defendants)’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이들이 고객들의 컴퓨터를 해킹하는데 가담했다고 거짓 주장하며 고소하는 방식으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 이러한 피고인들의 비양심적인 소송 전술(unscrupulous litigation tactics)은 얼마 가지 않아 법원에 의해 밝혀지게 되었고 2013년 5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은 피고인들을 제재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음.
- 피고인들의 이러한 엽기적인 행각에 대해 연방 및 주 검찰뿐만 아니라 FBI와 국세청까지 조사에 나서게 되었음.

사건의 경과

- 피고인들은 2016년 12월 16일 체포되었으며 미국 연방 검찰은 미국 연방 법상의 사기 모의(conspiracy to commit federal fraud), 실질적인 사기(substantive wire and mail fraud),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 charge), 위증 모의(conspiracy to commit perjury) 등 총 18건의 범죄 혐의를 이유로 들어 피고인들을 기소(indictment)하였음.

- Caldwell 법무부 차관보(Assistant Attorney General of the Department of Justice's)는 2016년 기소 당시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합의를 빙자한 사기 행위(fraudulent settlements)를 조장하면서 거짓되고 학대적인(false and abusive)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의 자격과 지위를 남용하고 법원과 소송 절차(legal process)를 이용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릇 되었으며 이와 같은 행동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 또한 법무부의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 조치는 변호사의 자격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불법적인 이익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해 사법 절차의 완결성(integrity of judicial proceedings)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함.
- 검찰의 기소 이후 John L. Steele은 2017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사건을 조사하는데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Paul Hansmeier도 2018년 8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검찰과 유죄인정합의(Plea Bargaining / plea agreement)하는데 동의함.
- 이를 통해 검찰은 Paul Hansmeier에게 150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기로 합의함.
- 미국 연방검찰은 2019년 3월 25일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innesota)에 BitTorrent, Pirate Bay 등과 같은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 저작권을 확보한 음란물을 미리 올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한 뒤에 음란물의 저작권을 기화로 무분별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돈을 갈취한 변호사 Paul Hansmeier에게 1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함.
- 특히 검찰은 변호사 Paul Hansmeier를 탐욕스럽고 오만하며 악의적인 인간으로 묘사하며 Paul Hansmeier의 잘못된 저작권 소송 전략으로 인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다고 평가함.

 시사점

-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문제와는 별도로 음란물의 저작권을 기화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금을 명목으로 많은 돈을 갈취한 변호사들에게 철퇴를 내린 최근 검찰의 판단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짐.
- 국내에서도 위의 Paul Hansmeier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2015년에 이미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학성 음란물 카페를 개설한 뒤 카페 회원들로 하여금 카페 게시판에 자신들이 제작한 가학성 체벌 동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한 뒤 동영상을 올린 카페 회원 170명을 상대로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허위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250만-300만원씩 총 3억2000만 여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하였음^{<2>}.
- 최근 대법원과 서울 고등법원이 예술성이 없는 음란물에 대해서도 저작물성을 인정한 판결 이후로 음란물의 저작권을 빌미로 합의금 장사를 시도하기 위한 음란물 제작자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허위 고소, 기획 소송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이미 실제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3>}속에서 현재의 디지털 시대를 반영한 음란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함께 국내에서도 위의 Paul Hansmeier사건과 같이 저작권을 기화로 한 남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2> 경태영, “음란체벌’게시 유도 뒤 ‘저작권침해’라며 거액 갈취”, 경향신문, 2015년 6월 23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231445341&code=940301#csidxdde557b163764ae9ff101136cdea6c3>

<3> 유현우·윤영빈, “음란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계간저작권」 제32권 제1호(통권 제125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년 참조.

※ 참고 자료

<https://bit.ly/2KFauVvQ>

<https://bit.ly/2UAIxmQ>

<https://bit.ly/2P8jamo>

<https://bit.ly/2UVQdj9>

<http://srib.mn/2v78VWw>

<https://bit.ly/2KCg9w8>

미국

법원,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묵시적 재이용허락이 가능하다고 판결

허원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OSI사는 원고 PIC사로부터 이미지에 대한 저작물 이용허락(license)을 받았고,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상인 피고 Orgill에게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함. 원고는 이러한 이미지 사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고, 소송 계속 중 OIS사와 중재 합의를 함. 당사자들과 중재인은 이 중재 합의에서 재이용허락(sublicense)이라는 표현에 대해 다투지 않았음. 법원은 이 중재 합의의 제반 문구들을 통해, 원고가 묵시적 재이용허락(implied sublicense)을 허용했다고 보았음.

사실 관계

- 원고 PIC(Photographic Illustrators Corporation)는 상업사진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메사추세츠 소재의 법인임. 원고는 OSI(Osram Sylvania, Inc.)에게 원고가 제작한 OSI의 조명 제품 사진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허락(license)을 함.
- 피고 Orgill은 OSI의 소매 판매점으로서, 각종 가정용 제품 및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소매상 네트워크를 유지·관리하는 법인임. 피고가 판매하는 제품 들에는 거의 1천개의 OSI 제품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카탈로그에 OSI의 이미지를 사용하였음. OSI는 피고의 소매상 또한 OSI의 제품 광고에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원고는 2014년 4월 11일에 피고와 피고의 소매상을 상대로 원고의 이미지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 제기 후 2014년 7월 23일에 OSI와 피고 Orgill은 저작권 재이용허락 계약(Confirmatory Copyright Sublicense Agreement)을 체결함. 본 계약에서 OSI는 이미지를 피고와 피고의 소매상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함. 당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OSI가 원고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서 피고를 포함한 소매상들에게 재이용허락(sublicense)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음. 이후 원고와 OSI는 중재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제외한 다른 OSI의 소매상들과 합의를 마침.
- 피고는 원고와 OSI의 중재 합의로 인해 저작권 침해에 관한 이 소송이 계속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원고는 피고가 위 중재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여전히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항변했음.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저작권의 소유, 저작물의 구성요소에 대한 복제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고 봄. 그리고 이용허락의 존재는 침해를 주장하는 자에 대한 상대방의 항변사유로 인정된다고 봄.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미지의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
 - 피고는 이 사건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OSI로부터 묵시적 재이용허락(implied sublicense)을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함.
- 원고는 묵시적 재이용허락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는 저작권 이용허락(license)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저작권법이 묵시적 재이용허락(implied sublicense)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또한 묵시적 이용허락(implied license)이 존재하

려면 요청(request), 제공(delivery) 및 의사(intent)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직접 계약해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과정마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묵시적 재이용허락에 대한 존부의 판단에 있어서 의사(intent)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원고와 피고가 직접 계약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대신에 피고가 묵시적 재이용허락을 받았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OSI에 이미지에 대한 이용허락을 할 시점에 재이용허락을 허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OSI가 피고에게 재이용허락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음.
- 법원은 원고와 OSI의 중재 합의 당시에 OSI가 이 사건 이미지에 대한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의사가 원고에게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함.
- 법원은 묵시적 재이용허락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고, 피고가 그 요건을 충족하여 묵시적 재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판결함.

평가

- 이 판결은 명시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되지 않은 묵시적 이용허락과 묵시적 재이용허락이 모두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그 요건을 명시하였음.

※ 참고자료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URTS-mad-1_14-cv-11818/pdf/USCOURTS-mad-1_14-cv-11818-2.pdf

미국

저작권청, 2023년까지의 전략 계획 발표

허원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미국 저작권청은 향후 5년 동안의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할 전략 계획을 발표함. 정보기술 현대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최적화, 매니지먼트에 대한 조직적 변화, 교육 및 참여, 저작권법 및 정책에 대한 적법하고 전문적인 지식, 성과에 대한 측정 등 6개의 우선 과제를 선정함.

배경

- 미국 저작권청은 5년 단위의 전략 계획(Strategic Plan)을 발표함. 2015년에 2016-2020 전략 계획을 발표하였음.
- 2019년 4월 5일에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 자유로운 표현의 핵심 동력”이라는 비전으로 2019-2023 전략계획^{<1>}을 발표함.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와 일반 대중의 이익을 모두 보호하여야 함. 이러한 과제에 있어 저작권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보고, 이를 위하여 6개의 우선 과제를 선정함.

우선 과제

- 정보기술 현대화 (Information Technology Modernization)

<1>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2019~2023 Strategic Plan

- 저작권 관련 커뮤니티의 현재와 미래의 요구들을 위하여 디자인된 강력하고 유연한 저작권 엔터프라이즈 시스템(Enterprise Copyright System; ECS)을 개발할 예정임.
- 매년 약 50만 건의 저작권 신청 중 95% 이상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짐에도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성능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서비스를 도입하며 직관적인 탐색과 도움말, 데이터 필드 유효성 검사 등을 개선할 예정임.
-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최적화 (Optimizing Business Processes)
 - 적절하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절차, 관행과 정책을 간소화하고 구조화할 예정임.
 - 비즈니스 프로세스 최적화는 업무 수행 방식의 비효율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사용자와 저작권청 직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개선점을 제공할 것임.
- 매니지먼트에 대한 조직적 변화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 현재의 저작권청은 1976년법(Copyright Act of 1976)의 시행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으나, 효과적인 현대화를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에 관하여 상하 전 범위에 대한 전략적 분석이 필요함.
 - 다양하고 혁신적인 임직원의 채용 및 유지는 저작권청의 미션과 비전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저작권청의 진화와 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음.
- 교육 및 참여 (Education and Engagement)
 - 저작권청은 저작권법과 저작권 생태계(copyright ecosystem) 내에서 저작권청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교육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
 - 저작권청의 현대화에 따라, 저작권 관련 커뮤니티의 요구들을 최대한 충

족시킬 수 있는 노력 하에서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저작권청과 소통할 수 있을 것임.

- 저작권법 및 정책에 대한 적법하고 전문적인 지식 (Impartial Expertise on Copyright Law and Policy)
 - 저작권청은 미국 내 저작권법 및 정책의 측면뿐만 아니라 외국법, 저작권 관련 조약 및 무역 협정에 관한 국제 문제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 의회와 법원, 정부 기관의 저작권법 및 정책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하여 적법하고 전문적인 조언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 성과에 대한 측정 (Measuring Success)
 - 성과에 대한 측정을 통해 저작권청은 저작권 관련자 및 일반 대중들에 대한 저작권 서비스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음.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저작권청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개선하고 문제 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격차를 확인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고, 정확한 성과 측정은 조직이 미션과 비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평가

- 이번 전략계획은 업무 절차에 대한 개선과 대외적 활동의 확대를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저작권 생태계 내의 역할을 통해 보다 대중적인 저작권청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음. 더욱이 저작권청 단독의 정책 방향이 아닌, 미국 의회도서관의 향후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할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음.

※ **참고자료**

<https://www.copyright.gov/newsnet/2019/760.html>

캐나다

셋톱박스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5백만 캐나다 달러 지급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

김혜성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TV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무료 이용할 있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사전 설치된 셋톱박스를 광고, 판매에 제공, 판매하는 행위 등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캐나다 연방 법원은 2019년 3월 20일 셋톱박스 판매업자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5백만 캐나다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 판결을 함.

사실 관계

- Bell Media는 캐나다 전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다수의 TV 방송국을 소유, 운영하는 캐나다 방송사이고 해당 프로그램들을 TV 방송을 통해 캐나다에서 공중에 전달할 권리를 보유함.
 - Bell Media는 자사가 제작한 TV 프로그램과 자사의 의뢰에 의해 독립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TV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뿐 아니라 자사가 전 세계의 저작권자들로부터 권리를 확보한 저작권을 보유함.
- Bell Canada는 방송법(Broadcasting Act, S.C. 1991)에 따라 방송사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을 받아 다양한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방송 배포자(broadcast distribution)임.
- 저작권자인 방송사는 공중이 스스로 선택한 때와 장소에 자사의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전자통신에 의해 공중이 자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 자사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를 복제할 권리 및 그

러한 행위들을 허락할 권리를 포함하여 전자통신을 통해 공중에게 자사 프로그램을 전달할 권리를 가짐(저작권법 제3조).

- 방송사는 방송업자로서 자사의 통신 신호(communication signals)를 고정하고 복제할 배타적인 권리도 가짐.
- 셋톱박스(set-top boxes)는 TV가 추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TV에 연결될 수 있는 전자기기임.
 - 이용자들은 셋톱박스를 TV에 연결한 다음 그 화면에 나타난 아이콘들을 클릭함으로써 셋톱 박스에 판매자가 사전 설치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최근 캐나다 시장에 출현한 일부 업자들은 자신들이 사전에 특정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셋톱박스(pre-loaded set-top boxes, 이하 ‘셋톱박스’)를 광고, 판매하고 있음.
- 캐나다 이용자들에게 판매되는 이러한 셋톱박스는 이용자들이 생방송 TV 프로그램, 주문형(on-demand) TV 프로그램, 스포츠 생중계 프로그램 등 방송사와 방송 배포자가 소유, 배포한 콘텐츠들에 불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줌.
- 이용자들은 일반적으로 ‘불법 애드-온(infringing add-ons)’이 사전 설치된 KODI 미디어 플레이어(KODI media player), ‘Showbox’ 애플리케이션, ‘프라이빗 IPTV 서비스(private IPTV service)’를 통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함.
- Infinity TV는 방송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무료로 무단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앱이 사전 설치된 셋톱박스를 판매함.
 - Infinity TV는 ‘ITV Unit’을 비롯한 셋톱박스를 광고, 판매를 위해 제공, 판매하는 www.infinitytv.ca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함.
 - Infinity TV는 이 웹사이트에서 셋톱박스가 ‘30만 편 이상의 영화, 2만 편 이상의 TV 프로그램, 스포츠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게 해 주고 이용

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때에’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며 더 이상 TV 프로그램 시청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해 준다고 광고함.

- Infinity TV는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infinitytvnow)도 운영하면서 셋톱박스를 광고함.

관련 규정

- ‘전자통신을 통한 공중에의 저작물의 전달’은 공중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전자통신에 의해 공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저작권법 제2.4조 1.1항).
- 저작권에는 어문저작물, 극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을 전자통신에 의해 공중에게 전달할 배타적 권리가 포함됨(저작권법 제3조 제1항 (f)).
- 이 법에서 저작권자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어떠한 행위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함(저작권법 제27조 제1항).

재판상 화해에서 인정된 Infinity TV의 저작권 침해 행위^{<1>}

- Infinity TV는 Bell Media와 Bell Canada(이하 이 둘을 함께 ‘Bell’)가 전자통신을 통해 캐나다에서 공중에게 전달할 권리를 가지는 TV 프로그램을 앱 사전 설치 셋톱박스의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자통신을 통해 공중에게 전달하였음이 인정됨.

<1> Bell Canada v. 2460269 Ontario Inc. dba Infinity TV, T-759-16 (Federal Court Mar. 20, 2019)

- 이로써 Infinity TV는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중 하나인 저작물을 전자통신을 통해 공중에게 전달할 권리를 침해한 것임.
- Infinity TV는 Bell의 암호화된 유료 프로그램 신호를 무선통신법(Radiocommunication Act)에 위반하여 Bell의 허락 없이 해독한 다음 수신할 목적에서 무선장치(radio apparatus)로 이용되거나 이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장비를 배포하고, 판매를 위해 제공하고, 판매하고, 설치하고, 소유하였음.
- Infinity TV는 저작권법 제3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앱 사전 설치 셋톱박스의 이용자들이 TV 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전자통신을 통해 전달할 Bell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하도록 유도하고 허용함.
- Infinity TV는 저작권법 제3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앱 사전 설치 셋톱박스의 이용자들이 TV Bell의 배타적인 TV 프로그램 복제권을 침해하도록 유도하고 허용함.
- 법원은 이와 같은 Infinity TV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앱 사전 설치 셋톱박스의 제작, 광고, 판매를 위한 제공 또는 판매 등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전자통신을 통해 공중에게 TV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함.
- 또한 법원은 Infinity TV로 하여금 Bell에게 손해배상으로 총 5백만 캐나다 달러를 지급하도록 함.

평가

- 이 판결은 앱 사전 설치 셋톱박스 판매업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인 경향과 일치하는 것임.

※ 참고 자료

<https://bit.ly/2GmTCOK>

<https://bit.ly/2KHeG80>

<https://bit.ly/2GpIWzR>

영국

“Brexit” 저작권자, 영국 정부 및 미디어 소유주 상대 소송 제기

강병호 (미국 변호사, Juris Doctor)

화재 대피로 Fire exit routes와 영국 간판 시스템 British sign system이라는 문구를 조합하여 만든 신조어 “Brexit”의 무단 이용에 대해 프랑스 ADF 社가 영국 정부 및 미디어 소유주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사실관계

- 2012년 3월, 프랑스 ADF Signage Systemes 社는 자신의 저작물인 “Brexit” 신조어에 대해 영국에서 저작권 등록을 받았음
- 해당 회사는 간판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화재 대피로(Fire exit routes)와 영국 간판 시스템(British sign system)이라는 문구를 조합하여 신조어인 “Brexit”를 만들었음
- 한편,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서 영국은 EU 탈퇴를 결정하였으며^{<1>}, 이 때부터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인 브렉시트(Brexit)라는 조어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널리 쓰이게 되었음
 - 2019년 4월 기준, 2012년 3월 이래로 영국 일간지 The Times of London에는 “Brexit”라는 키워드가 약 35,389회 등장함^{<2>}

<1> <http://bitly.kr/jvG7n>

<2> <http://bitly.kr/Iebma>

- 2019년 4월 기준, Google searches에서는 2012년 3월 이래로 약 50억 회 이상 “Brexit”라는 조어가 등장하였고, 하루 최대 5억 회가 언급되기도 하였음^{<3>}

원고 측 주장

- 2019년 4월, 프랑스 ADF社は 영국 정부 및 미디어 소유주들을 상대로 자신의 저작물인 “Brexit”의 무단 이용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음

영국의 공정처리(fair dealing) 법리

- 미국의 공정이용(fair use) 법리와 유사하게 영국 저작권법은 공정처리(fair dealing) 조항^{<4>}을 갖추므로써, 원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공중의 이익 사이의 충돌을 조율하고 있음
 - 공정처리 법리에 따르면,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됨
 - 보다 구체적으로 영국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3장 제29조 또는 제30조에서는 공정처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a) 연구 또는 사적인 학습(research or private study); (b) 비평 또는 논평(criticism or review); (c) 뉴스 보도(news reporting of current events)의 목적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음^{<5>}

<3> 상동

<4> 미국 연방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과 비견되는 조항으로, 영국 실무에서는 fair dealing, free use, fair practice 등으로 사용됨

<5>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h. III Art. 29-30.

- 한편, 공정처리 항변을 위해서는 피고가 자신의 처리(dealing) 행위가 공정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영국 Hubbard v. Vesper 판결에 따르면 공정성 여부는 정도의 문제(a question of degree)로서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기는 불가능하며, 법관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임^{<6>}
 - 다만, 위 판례에서는 공정성 판단 과정에 있어 법관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바 인용과 발체의 횟수 및 범위^{<7>}, 인용 및 발체의 목적^{<8>}, 인용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

쟁점 및 전망

- 영국의 경우, 저작권침해 시 손해배상액은 해당 저작물의 인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본 사안의 경우 원고의 승소 시 손해배상액은 최소 2억2천4백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9>}
- 한편, 본 사안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처리 법리가 영국 정부 및 미디어 소유주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사안이 공정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법관이 고려할 수 있는 세부 요소들을 확인 및 추가하는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비평 또는

<6> HUBBARD v. VOSPER, [1972] 2 Q.B. 84, 94

<7> 공정처리에 필요한 범위와 횟수를 넘어선 경우 불공정이 될 수 있음

<8> 원저작자와 경쟁할 목적(a rival purpose)으로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정처리가 인정되기 어려움

<9> <2>와 동일

논평 혹은 뉴스 보도 등 대중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목적에서의 “Brexit” 용어 사용이 영국 정부, 비상업적 미디어 소유주, 나아가 상업적 미디어 소유주 등 어느 범위의 주체에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http://bitly.kr/Iebma>

<http://bitly.kr/7QD8J>

영국

지재권 기업법원, 저작권 이용허락이 있다고 믿었다면 하였을 행위들은 저작권 2차적 침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함

허원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영국 지재권 기업법원(IPEC)은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저작권의 2차적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영국 저작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23조 불법복제물의 점유 또는 처리에 의한 2차적 침해의 요건 중 "저작물이 불법 복제물이라는 것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knows or has reason to believe) 자가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 이용허락이 있다고 진실로 믿었다면 행하였을 행위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당해 사안이 저작권의 2차적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함.

사실관계

- Eminem으로 잘 알려진 Marshall Bruce Mathers 3세는 1999년에 2집 The Slim Shady LP 앨범으로 유명해진 가수임. 이 사건은 그의 1집 Infinite 앨범의 배급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안임.
- 원고 FBT Productions는 Detroit에 본사를 둔 음반회사로서, 1980년부터 Mark Bass와 Jeff Bass 형제가 운영한 회사이고 음반 제작을 해왔음. 자신이 Infinite 앨범 녹음에 대한 저작권자이고 피고들이 Infinite 앨범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첫 번째 피고 Let Them Eat Vinyl Distribution Ltd.(LTEV)는 Wallingford에 소재한 음반 회사로서, Infinite 앨범을 LP로 제작하여 두 번째 피고 Plastic Head Music Distribution Ltd.(Plastic Head)에게 공

급하였음. Plastic Head는 피고 LTEV가 제작한 LP 음반을 판매하였고, 매사추세츠 소재의 다른 회사가 제작한 CD 음반을 판매하였음.

- 법인 전환 전의 FBT는 1995년에 Eminem이라 불리는 한 가수와 음반 계약을 체결했음. 1996년에 Eminem은 Infinite 앨범을 녹음하였고, 같은 해 Web Entertainment 레이블을 통해 앨범을 발매하였음. 이후 몇 개월 동안 250개의 LP, 250개의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하였음.
- 1998년에 Eminem과 Bass 형제는 Universal Music 소속의 Aftermath Entertainment와 계약을 체결하고 1999년에 2집 앨범 The Slim Shady LP를 발매함.
- 2000년에 FBT가 법인으로 전환 설립되었고, FBT 법인은 Bass 형제의 모든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함.
- 2014년에 피고들은 Boogie Up이라는 회사가 Infinite 앨범을 포함한 몇몇 음반의 LP 제작에 관한 이용허락을 취득했다는 정보를 접하였음. 피고들은 Infinite 앨범을 제작 및 판매하기 위하여 영국의 음악 저작권 신탁업체인 Mechanical Copyright Protection Society(MCPS, 現 PRS for Music)에 문의하였음. MCPS는 Infinite 앨범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해줄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최대 2,931개의 LP 앨범 제작은 승인하였음. 이에 따라 피고 LTEV는 Boogie Up으로부터 음원 WAV 파일을 받아 LP 앨범을 제작하였고 피고 Plastic Head는 이를 판매하였음.
- 2016년에 원고 FBT가 피고 LTEV에 서한을 보냈고, 피고 Plastic Head는 Infinite 앨범 판매를 중단하였음. 이후 본 소송이 제기되었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저작권을 소유하지 못하였다고 항변함.

- 피고들은 Eminem과 Bass 형제가 체결한 1995년 계약에는 계약 기간 동안 작곡되고 녹음된 Eminem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음반 제작에 대한 저작권의 내용은 없다고 주장함.
 - 미국 저작권법의 경우 음반 제작에 대한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는 처음 녹음된 음반을 제작한 사람임.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음반 제작에 대한 저작권은 1995년 계약에 명시적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최초 음반 제작자인 FBT에 있다고 봄.
 - 또한 법원은 Eminem과 Aftermath Entertainment가 체결한 1998년 계약에 원고인 FBT도 당사자였다고 확인함. 따라서 원고 FBT는 Infinite 앨범의 저작권 소유자가 됨.
- 이후 피고들은 LP로 제작된 Infinite 앨범이 불법 복제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함.
- 영국 저작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the 1988 Act) 제23조에는 불법 복제물의 점유 및 처리에 따른 저작권의 2차적 침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음. 불법 복제물이라는 것을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knows or has reason to believe) 자가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2차적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임.
 - 법 제27조에 의해, 피고 LTEV가 제작한 Infinite LP 앨범은 제작 당시에 저작권이 Boogie Up이 아닌 원고 FBT에 있었기 때문에 불법 복제물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 Plastic Head가 판매한 LP 앨범은 불법 복제물이고, 피고들이 이를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피고들은 제23조의 저작권 침해자가 됨.
 - 피고들은 Infinite의 LP 앨범을 제작하기 전에 MCPS에 이용허락을 신청하였고, 일정량의 제작 승인을 받았으며, 8.5%의 저작권료를 MCPS에 지급하였고, 앨범의 표지에 제작자 정보를 충실히 표기하였으며, FBT의 서한을 받는 즉시 판매를 중단했다는 사실을 들어 Infinite 앨범이 제27조의 불법 복제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 즉, 피고들

은 법 제23조의 침해 요건 중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음반을 판매하기 전에 당해 앨범의 저작권에 대하여 보다 많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만큼 충분히 음반 산업을 경험했다고 항변함.
- 법원은 불법 복제물임을 몰랐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피고들은 저작권이 있음을 믿었을 경우 행하였을 행동을 하였다고 보았음. 이를 근거로 피고들은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이에 따라 법원은 음반 제작에 있어서는 피고 LTEV가 원고 FBT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나, 2차적 침해(법 제23조)에 있어서는 피고들 모두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평가

- 이 판결은 영국 저작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the 1988 Act) 제23조의 해석에 있어서 알거나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우리 법의 경우 악의 또는 과실-in bad faith or negligence)것에 대하여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선의(in good faith)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용허락이 있다고 믿었다면 행하였을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함.

※ 참고자료

<https://www.bailii.org/ew/cases/EWHC/IPEC/2019/829.html>

이탈리아

대법원, 이용자 게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제공한 야후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는 호스팅 서비스에 해당한다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용자들에게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제공한 야후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인 호스팅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이탈리아 대법원은 야후는 소극적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저작권자의 통지나 여타 방식을 통해 알게 된 때 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며 다만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발견될 수 있는 URL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함.

☞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 이탈리아 방송국인 원고는 야후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이용자들이 게시한 불법 동영상에 대하여 야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밀란 지방법원은 야후는 자사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이용자가 게시한 시청 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 밀란 항소법원은 야후는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는 호스팅 서비스로 EU 전자상거래지침상 및 이의 이행을 위한 이탈리아 국내법^{<1>}상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면책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1> 이탈리아 이행 지침 70/2003(Italian Legislative Decree 70/2003) 제16조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이용 행위나 게시 정보가 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면책조항임.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야후는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로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탈리아 대법원에 상고함.

이탈리아 대법원의 판단

- 2019년 3월 19일 이탈리아 대법원은 이용자들에게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제공한 야후는 소극적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로서 저작권자의 통지나 여타 방식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 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며, 다만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발견될 수 있는 URL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함.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필터링, 선별, 인덱싱, 조직, 분류, 평가, 이용, 변경, 추출, 기업적 관리를 통한 콘텐츠의 홍보, 이용자들의 충성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용자 행위를 평가할 목적의 톨 채택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적극적 서비스 제공자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제3자가 게시한 불법 온라인 콘텐츠의 소비를 완성시키고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 적극적 서비스 제공자라고 할 수 있음.
 - 제3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있는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됨.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야후는 소극적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소극적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침해 행위를 인식하고서도 불법 콘텐츠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다만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i)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를 통하거나 여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자체 인증을 통해 이용자에 의한 불법 행위를 알게 되고; ii) 이용자의 행위의 불법성이 합리적으로 명백하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자의 경험, 지식, 주의의무에 비추어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iii)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콘텐츠를 인식한 순간 충분히 구체적인 방식으로 불법 콘텐츠의 삭제를 위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을 것.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콘텐츠에 대하여 인식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 저작권자가 공식적인 저작권 침해 중단 서식을 발송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 통지와 같이 단순한 의사 전달만으로도 충분함.
 - 저작권자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 요청 시 침해 콘텐츠의 URL을 지정할 필요가 없음.
 - 특히 독창적인 방식으로 결합한 단어로 구성된 제호를 가진 저작물의 경우 피침해 저작물의 제호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URL은 침해 콘텐츠의 확인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에만 요구됨.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동일한 침해 콘텐츠가 재게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유지(stay-down) 의무가 있으며, 이는 EU 전자상거래지침상 금지되는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2>}에 해당하지 않음.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규정은 불법 콘텐츠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적극적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유럽

<2> 동 지침 제15조: 회원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12조 내지 제14조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모니터링 일반 의무를 과해서는 안 되며, 불법한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일반 의무를 과해서는 안 된다.

사법재판소의 판결^{<3>}과 동일한 맥락에 있음.

- 이탈리아 일부 하급심 법원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 삭제 통지시 침해 콘텐츠 URL을 표시할 것을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발견될 수 있는 URL을 표시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 이탈리아 대법원이 저작권자가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에 불법 저작물 삭제 통지 요청시 URL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야후가 저작권 침해 행위 발생시 저작물의 제호만으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임.

※ 참고 자료

<https://bit.ly/2KjfOOM>

<https://bit.ly/2FYy1Ma>

<https://bit.ly/2Gbt2Q>

<3> UPC Telekabel Wien, C-314/12, EU:C:2014:192. 이 판결에서 2014년 3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저작권자가 불법 파일 공유 사이트로의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파일 공유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럽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가입자가 불법 콘텐츠에 실제로 접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금지명령을 받기 위해서 저작권자는 단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가입자가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된다고 판시함.

일본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 추진 현황 발표

권용수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은 지식재산전략본부 검증·평가·기획위원회 콘텐츠 분야 회의에서 저작권 교육·의식 계몽, 정품 유통 촉진,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 전담 조직 설치, 국제 연계·집행 강화, 검색 사이트 대책, 광고 억제, 필터링, 접근 경고 방식, 리치사이트 대책 등에 관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2019년 상반기·후반기 실시 예정 방안을 발표함.

배경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9년 3월 29일 제4회 지식재산전략본부 검증·평가·기획위원회 콘텐츠 분야 회의를 개최하고, 모방품·해적판 대책에 대해 논의함.
-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은 회의의 주된 논점인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에 관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2019년 상반기·후반기 실시 예정 방안을 발표함.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 추진 현황

- 민관이 연계해 보다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의식 계몽을 실시
 - 총무성·문부과학성은 정보 통신 분야의 기업·단체와 협력해 전국 교육 현장에서 불법 복제 문제 등 저작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 한편, 경제산업성

은 출판홍보센터나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를 통해 해적판 캠페인이나 포스터·동영상 제작·공개 등을 통한 계몽 활동을 함.

- 2019년에는 위의 활동에 더해, 문화청이 2018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 교육 교재를 참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계몽 활동을 할 예정임.

○ 정품 유통 촉진

- 출판홍보센터가 2018년 11월 전자중개사업자나 전자서점의 협력을 얻어 정품 전송 사이트 등에 표시되는 ABJ(Authorized Books of Japan) 마크 운용을 시작함.

- 2019년에는 만화·애니메이션 해적판 대책 협의회 내에 중소출판사를 포함한 만화·애니메이션 사업자에게 사업 연계 등의 협의·연락을 하는 워킹 그룹을 설치할 예정임.

○ 인터넷상의 해적판 특징에 따른 최적의 대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 전담 조직 설치

- 일본 총무성은 통신사업자의 협력이 필요한 대책을 실시하는 전제로서, 권리자 측과 통신사업자 측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함. 2019년에는 양자의 신뢰·협력 관계를 강화·구체화하고자 상호 간의 대화나 이해 아래 양자가 협동해 구체적인 대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임.

- CODA와 광고 관련 3단체^{<1>}는 2018년 7월부터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광고 억제에 관한 정기 협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공동 회의 기구를 설치·운영할 예정임.

<1> 광고 관련 3단체는 공익사단법인 일본광고주협회(JAA), 일반사단법인 일본광고업협회(JAAA), 일반사단법인 일본인터넷광고협회(JIAA)를 말함.

○ 국제 연계·집행 강화

- 경찰은 외교 경로 등을 통한 국제 수사 공조 체제를 활용하고, 국외 수사 기관에 협력을 요청해 해적판 사범을 포함한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에 힘 씀. 특히 상호 교류가 활발한 국가나 지역과는 국제 수사 공조 신속화·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형사 공조 조약(협정)을 체결함.^{<2>}
- 또한 일본에서는 법무성 주도로 사이버 범죄에 관한 조약, 국제조직범죄 방지 조약 등 형사 공조를 규정하는 다국 간 조약을 체결하고, 많은 국가·지역과 원활한 국제 수사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2019년에는 베트남과 형사 공조 조약을 신규 체결하려고 협상을 추진할 예정임.
- 한편 경제산업성은 CODA를 통해 ① 저작권 침해 국가의 최신 정보 파악, ② 각 국가의 권리자 단체와 협력해 저작권 침해 국가의 수사기관에 대한 단속 강화 요청 등을 실시, ③ 권리자와 협의 후 불법판매업자 등에 대한 공동 집행 실시를 함.

○ 검색 사이트 대책

- 문화청은 2019년 2월에 권리자 단체와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 사업자가 협의해 검색 결과에서 해적판 사이트를 삭제하거나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등을 추진한 후,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가 필요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정리함.

○ 광고 억제

- 현재 광고 관련 3단체는 CODA가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 리스트를 회원사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JIAA가 광고 전송 플랫폼 사업자의 적절한 광고 선정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책정할 예정임.

○ 필터링

<2> 지금까지 미국, 한국, 중국, 홍콩, EU 및 러시아와 형사 공조 조약(협정)을 체결하였음.

- 총무성은 2018년 2월 개정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 시행^{<3>}에 따라 청소년 필터링을 한층 강화하고자 사이트·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체제 구축이나 관계사업자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이용자 관리 체제를 구축함.
- 또한 해적판 사이트 중에는 보안상 문제가 있는 사이트도 있으므로 보안 소프트웨어에 의한 필터링 활용을 염두에 두고 권리자 단체와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의 연계 체제를 구축함.
- 접근 경고 방식
 - 총무성은 ISP에 의한 ‘접근 경고 방식’ 도입 방안을 검토함과 함께, 도입에 앞서 필요한 검토 과제 중 하나인 통신의 비밀과의 관계 등에 대한 법적 정리를 함.
 - 2019년 상반기에는 접근 경고 방식 도입 관련 법적 과제 검토와 함께 그 기술적 가능성이나 필요한 비용에 대해 통신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고, 하반기에는 검토 결과나 통신사업자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ISP에 의한 접근 경고 방식 도입 구체화를 목표로 ISP 등과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리치사이트 대책 및 다운로드 위법화 범위 확대
 - 문화청은 제198회 정기 국회에 리치사이트 대책, 다운로드 위법화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다운로드 위법화 범위 확대를 둘러싼 다툼이 심화되면서 개정법안 제출을 미루기로 결정함.

※ 참고 자료

<https://bit.ly/2YZ8IT1>

<3> 일본 정부는 2018년 2월부터 필터링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①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계약대리점에 청소년 확인·필터링 설명·필터링 실효화 조치를, ②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 사업자 등에게 필터링 용이화 조치를, ③ OS 개발 사업자에게 필터링 실효화나 용이화 조치를 고려한 OS 개발을 의무화하는 개정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을 시행함.

일본

도쿄지방법원,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는 그 제조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권용수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도쿄지방법원은 상품에 사용된 일러스트의 저작권 및 저작자인격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에서,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는 그 제조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였더라도 일러스트의 제작 과정을 확인하는 등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지적하고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과실을 인정함.

사실 관계

- 원고는 ‘Ai’ 또는 ‘Aii’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피고 A·B는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대표이사 등 임원이 같은 관련회사임.
- 원고는 2013년 4월 무렵 일러스트(이하 ‘이 사건 일러스트’)를 제작하고, 같은 해 5월 이 사건 일러스트를 표시한 수건 사진을 블로그에 업로드 함.
- 피고 A는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을 제조해 소매점이나 피고 B에 판매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소매점 등에 판매하였음.
- 피고들은 이 사건 상품 포장에 이 사건 일러스트를 일부 수정한 일러스트(이하 ‘피고 일러스트’)를 사용하였고, 원고의 성명 또는 필명은 표시하지 않았음.

- 다만 이 사건 상품 포장 등은 피고들이 아니라 외주업체가 제작하였음.
-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자신의 저작권(복제권, 양도권) 및 저작인격권(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공동으로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① 일본 저작권법 제112조 제1항^{<1>}에 따른 이 사건 일러스트의 복제 및 배포 금지, ② 동조 제2항^{<2>}에 따른 이 사건 상품의 폐기, ③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④ 일본 저작권법 제115조^{<3>}에 따라 저작자임을 알리고 명예,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로서 사죄광고를 요구함.

사건의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 원고는 피고 일러스트의 경우 이 사건 일러스트를 일부 수정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자신의 복제권 및 양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성명 또는 필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일러스트에 원고의 뜻에 반하는 수정을 함으로써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1> 일본 저작권법 제112조 제1항에서는 저작권자 등이 그 저작권이나 저작자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일본 저작권법 제112조 제2항에서는 저작권자 등이 저작권 침해 물건 등의 폐기, 그 밖에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일본 저작권법 제115조에서는 저작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자인격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자신의 명예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적당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피고들에게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 피고들은 이 사건 상품 포장 등을 외주업체가 제작하였고, 외주업체의 디자인 제작 등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상품의 제조를 다른 회사에 위탁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고 일러스트의 사용 여부를 결정한 것은 피고들이므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함.
- 사죄광고 등의 필요성
 - 원고는 이 사건 일러스트의 저작자임을 알리고 자신의 명예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사죄광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 도쿄지방법원(이하 ‘법원’)은 2019년 3월 13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일러스트가 원고의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일러스트와 피고 일러스트는 모두 이마를 맞대고 마주한 크고 작은 2마리 판다를 그린 것이며, 2마리 판다의 자세, 표정, 크기 비율 등을 포함한 구성이 매우 비슷해 표현상의 본질적 특징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피고 일러스트는 이 사건 일러스트를 토대로 약간의 수정을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음.^{<4>}
 - 한편 피고 일러스트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상품에 원고의 성명 또는 필명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4> 다만 이 사건 상품을 제조·판매한 피고 A에 대해서는 복제권(제조 관련) 및 양도권(판매 관련) 침해를 인정한 반면, 판매만을 한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음.

피고 일러스트 중 원고의 허락 없이 변경된 부분은 원고의 뜻에 반하여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함.

- 법원은 피고들이 업으로서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였음을 지적하고, 그 제조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였더라도 피고 일러스트의 제작 과정을 확인하는 등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함.
 - 이 사건 일러스트와 피고 일러스트의 동일성 정도가 상당히 높음을 생각하면, 피고들이 피고 일러스트 제작 과정만 확인했더라도 저작권 침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회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됨.
 - 그럼에도 피고들이 위와 같은 확인을 게을리 한 것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됨.
- 위의 판단을 토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피고에 대한 피고 일러스트 복제나 양도 금지, 피고 일러스트가 사용된 이 사건 상품의 폐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 일러스트의 양도를 넘어 배포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 상품의 대여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인정하지 않음.
 - 또한 원고는 사죄광고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피고 일러스트의 사용 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품 판매로 원고의 명예나 명성이 훼손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 제기 후에 상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등을 생각하면 원고가 저작자임을 알리기 위해 복제 등의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에 더해 사죄광고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함.

※ 참고 자료

<https://ipforce.jp/Hanketsu/jiken/no/1254>

중국**법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보호범위에서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을 명시함**

백지연 (북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여부 판단에 있어 법원은 두 작품 간의 실질적 유사의 정도를 쟁점으로 봄. 원심 법원에서는 두 작품의 아이디어와 감정선을 표현하는데 있어 작가의 선택, 배분, 설계 등의 유사 여부 및 독자 혹은 시청자들이 유사하다고 느끼는 정도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 원고와 피고의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결정함. 항소심 법원은 전체 스토리의 구성, 인물간의 관계, 창작 요소 3가지의 기준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 원고와 피고의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원심 판결을 유지함.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유명소설 <사악한 최면술사>(邪恶催眠师)의 저자이며 2013년 4월 소설이 출간된 이후 2014년 4월 본 소설을 드라마화 하기 위해 후난위성과 판권 계약을 진행하던 중 가격 문제로 인해 계약이 무산됨.
- 피고는 드라마 <미인제조>(美人制造)의 29회, 30회의 대본작가임. 피고는 2014년 6월 6일 동양환위회사 (东阳欢娱公司)와 드라마 대본 작성에 관한 계약을 체결 후 6월 30일 총 5회에 달하는 분량의 대본을 완성함. 드라마 <미인제조>의 29회, 30회차 엔딩 크레딧에는 작가 피고, 제작자 동양환위회사 및 후난위성, 저작권자 동양환위회사로 명시되어 있음.
- 본 안의 드라마가 방영된 후 원고는 피고의 대본이 자신의 소설과 상당 부분 유사하며 이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제작자인 후난위성과 동양환위

회사는 제작 및 촬영자로서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

- 원심 법원인 양주시 중급법원은 소설의 출판 시기와 원고와 후난위성이 판권 계약을 논의한 시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 측이 원고 측 소설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판단함.
- 원심 법원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두 작품의 아이디어와 감정선을 표현하는데 있어 작가의 선택, 배분, 설계 등의 유사 여부 및 독자 혹은 시청자들이 유사하다고 느끼는 정도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확인함. 이에 대해, 원고 측의 소설과 문제가 된 드라마의 29회, 30회가 주된 아이디어가 최면에 관한 것으로 동일하고 악역의 감정선과 복수를 하게 되는 동기 등에서 유사한 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 내용의 구성, 전후 순서, 인물 묘사 및 인물 간의 관계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함. 두 작품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함.^{<1>}
- 원심 판결에 대해, 원고는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함. 원고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두 작품의 다른 점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유사성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원고의 작품은 소설이고 피고의 작품은 드라마임을 감안해 실질적 유사성 판단 시 두 작품의 유형으로 인한 차이점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소설의 원문과 대본의 문자 그대로의 내용을 비교하는 방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함.
- 항소심 법원인 장쑤성 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두 작품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1> 양주시중급법원 (2015)扬知民初字第 00015호 민사판결문

최종적으로 판시함. <2>

- 첫째, 전체적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두 작품 모두 최면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였지만 최면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가 다르고 내용 구성의 전후순서 또한 상이함. 이로 인해 독자 혹은 시청자들이 두 작품이 유사하다고 느끼는 정도 또한 완전히 다른 두 작품으로 인식하고 있음.
- 둘째, 인물묘사와 인물 간의 관계에 있어 두 작품은 서로 다른 내용의 전개를 따르고 있으며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운명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묘사됨. 두 작품 간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물 간의 관계 또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
- 셋째, 창작 요소로 볼 때 ‘최면’이라는 소재는 이미 오랫동안 작품의 소재로 쓰여 왔음. 두 작품은 우연히 최면이라는 동일한 소재를 사용했으나 최면이라는 요소가 전제 작품 내용의 구성 부분에서 전혀 다른 작용을 함. 또한 원고의 소설에서 최면에 관한 주요 부분이 “사람을 물다”, “새가 누각에서 뛰어내리다”, “물잔을 깨다”와 같이 총 세 부분이고 이를 각각의 창작 요소라고 간주했을 때 이는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보아야 함. 그러므로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세 가지 창작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에 한정되어 있음.
- 넷째, 쟁점이 되는 부분의 전체 작품에서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소설의 경우 장편소설로 최면에 관한 요소가 등장하는 부분의 비율이 극히 제한적임. 피고의 드라마 29회 30회에서 세 번에 걸친 최면에 관한 부분이 전체 내용의 미치는 영향이 원고의 소설과 상이함.

<2> 장쑤시고등법원 (2017) 苏民终236호 민사판결문

평가 및 전망

-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2014년 중국의 인기드라마 '궁쇄연성(宮鎖連城)'이 대만 인기 작가 경요(瓊瑤)의 1993년작 소설 '매화락(梅花烙)'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방영 금지 처분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논쟁이 있어 왔음. 본 안의 드라마는 '궁쇄연성' 과 총괄 작가와 제작사가 동일한 드라마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부터 업계의 주목을 끌었음. 하지만 2014년 판결과 달리 장쑤성 고등법원은 소설과 드라마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사건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을 넓게 판단함.

※ 참고 자료

<http://news.zhichanli.cn/article/8073.html>

중국

퇴사 후 전 회사의 게임과 유사한 게임을 개발한 직원 5년 유기징역 확정

백지연 (북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게임개발사에 재직 중이던 직원이 퇴사 후 본인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회사를 통해 원 게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을 개발해 런칭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 및 형법 위반 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청두 법원은 개발코드를 도용해 원 게임의 핵심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했음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 및 형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400만 위안(한화 약 7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액과 징역 5년을 선고함.

사건의 경과

- 피고인은 2017년 2월 한 게임회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며 회사 SVN서버의 계정, 비밀번호 및 한 보드게임의 개발코드를 입수함. 2017년 5월에서 6월 중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게임관련 회사 두 개를 설립하고 본인이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함.
- 피고인이 2017년 8월 정식으로 회사를 퇴사한 후 퇴사 전 사측에서 개발 중이던 보드게임과 유사한 게임이 시장에 런칭 되었으며 피고인의 두 회사가 각각 기술지원과 홍보를 담당함. 게임은 런칭 4개월 만에 이용자의 캐시 충전액이 8,224만 위안(한화 약 138억 원)에 달함.

법원의 판단

- 2019년 1월 22일 청두 법원은 피고인이 원 게임의 개발코드를 도용하고 핵심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여 원 게임과 피고인의 회사가 기술지원 및 홍보하는 게임 간의 유사도가 99%에 달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또한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고 침해로 인한 이익액이 크므로 형사상 저작권침해죄에 해당함. 이에 대해 청두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 217조 또한 위반 하였음을 이유로 400만 위안(한화 약 7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액과 징역 5년을 선고함.
- 법원은 피고의 양형 기준에 대해 형법 제217조 후문 “침해로 인한 이익액이 매우 큰 경우 특별히 중대한 침해행위로 분류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벌금형을 적용한다”을 근거로 하였음을 명시함. “침해로 인한 이익액” 규모의 기준으로 법원은 불법 소득액이 15만 위안 이상 불법 영업 이익이 25만 위안 이상인 경우를 제시함. 본 안의 경우 불법 영업 이익에 대한 증거가 더 확실하고 액수가 크에 따라 불법 소득액이 아닌 불법 영업 이익 액을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함.

평가 및 전망

-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더 이상 침해 중지, 손해 배상 등의 민사적 책임 또는 영업 정지, 침해품 몰수 혹은 폐기 등의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형과 벌금 등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번 판결은 형법 217조에 단순히 명시 되어 있던 “침해로 인한 기준액”의 산정 근거로 2004년 발표된 <중국최고인민법원과 최고검찰의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사건의 법률 적용에 관한 문제의 해석> 제5조를 적용함. 형사사건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 산정에 있어 95년도 중국최고검찰이 발표한 문건 상에

기준액을 명시 되어 있었으나 기준액이 매우 낮아 실효성이 없어 그동안 재판 부에서 근거 법률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해당문건은 18년 폐지 되었음. 지식재산권 관련 기타 법률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단순히 배수로만 제시되어 있었음.

참고 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392530.html>

칠레

산티아고 법원, 유명 이탈리아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의 저작권자 동의 없는 음악 재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판시

이동규 (칠레대학교 국제학 석사과정)

레스토랑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재생된 음악저작물의 지적재산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산티아고 고등법원은 이를 재생한 주체에게 해당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할 경우 음악저작물의 무단 사용으로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벌금을 납부할 것을 판시함.

사실관계 및 사건 개요

- 원고 칠레저작권협회(Sociedad Chilena del Derecho de Autor, 이하‘SCD’)는 SCD에 등록된 음악저작물이 산티아고 지역에 위치한 “La Piccola Italia” 레스토랑에서 무단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이유로 해당 레스토랑의 운영주체인 MISE 유한회사를 피고로 하는 저작권의 지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 산티아고 지방법원 제17부는 관련 법률^{<1>}에 따라 원고가 음악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들을 집단적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임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장소인 해

<1>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법률 17,336호,‘지적재산권법’) 제5장의 조항에 의거, 교육부의 결의안 3891과 2608에 의해 운영 허가를 받은 SCD는 저작자, 작곡가, 아티스트, 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 및 기타 권리 보유자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집단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있는 단체로서 시청각, 연극 및 안무 작품 및 음반 내 텍스트의 유무에 상관없이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에 관한 국내외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당 식당에서 음악저작물이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 또한 부담해야 함을 밝히며, 소송 과정에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함.

- 재판부는 재생된 음악저작물이 SCD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국내외 저작자들의 작품 중 어떤 작품이 사용되었는지, 해당 저작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원고가 해당 음악저작물들의 원저작자를 대표한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봄.
-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 당사자 적격을 부정하여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SCD가 관련된 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항소함.

산티아고 고등법원의 판단

- 2018년 12월 26일 항소법원은 MISE 유한회사가 SCD에 등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역 레스토랑 체인점에서 재생한 행위가 지식재산권법의 위반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침해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함.
-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레스토랑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레코드 시스템과 라우드 스피커로 재생된 음악저작물은 SCD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저작물이 SCD에 등록된 저작물이 아닌 지식재산권법 제11조에 언급된 ‘공동문화유산’에 속하는 저작물^{<2>}임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함.
 - 재판부는 피고가 재판 기간 동안 재판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이러한 책임

<2> 동법 제11조에 따르면 ‘공동문화유산’의 작품은 원작자의 존재와 저작물의 완결성을 해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사용의 제약을 받지 않음.

을 회피하였으므로 재생된 음악저작물들이 SCD의 등록물에 속한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힘.

- 그러면서 SCD의 데이터베이스 내 음악저작물 사용 권한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특정 라이선스를 부여함으로써 발생되며, 이러한 라이선스는 SCD와 칠레호텔외식업협회(Hotel and Gastronomic Industry of Chile, HOTELGA) 간에 체결된 계약^{<3>}에 따른 일반 요금의 지불 또는 각 사용자 협회와 합의한 특별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승인이 가능함을 재확인함.
- 이에 재판부는 소송의 경과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지식재산권법 위반에 따른 벌금의 납부 및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함.
 -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보상금으로 “La Piccola Italia”라고 불리는 사업장의 월 평균소득(CLP 10,000,000)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을 시작한 2012년 7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소가 제기된 2016년 8월 1일 이후부터 불법 사용이 중지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함.
 - 상기 금액은 매월 1일과 실제 지불 이전 달의 마지막 날 사이의 소비자 물가 변동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으며, 모든 금액에는 관련 권리에 대한 50%의 추가적인 보상금이 부과됨.
 - 또한 피고는 지식재산권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 및 소송비용(CLP 241,765)을 부담해야 함.

<3> 1992년 11월 9일 HOTELGA와 SCD간에 체결 된 계약에서, 음악저작물의 재생주체는 통상적으로 월별 음악 단위(Unidades Musicales Mensuales, ‘U.M.M.’, CLP 22,526)의 3.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지불하며, 관련 권리에 대한 50 %의 추가적인 보상금이 부가됨. 한편, 재생주체가 HOTELGA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SCD에 대하여 특별 요율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SCD에 등록된 음악 작품을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음.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은 음악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들의 집단적인 관리 주체를 SCD로 재확인한 동시에, 공공장소에서 재생된 음악저작물의 경우 통상적으로 SCD에 등록된 저작물로 보아 저작물 사용 권한에 대한 증명책임을 재생주체에게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해당 사건이 SCD가 산티아고 내 유명 레스토랑 체인점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소송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동의 없는 음악저작물 재생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인식 제고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주체를 분명하게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함.

※ 참고 자료

<https://bit.ly/2RkImK0>

<https://bit.ly/2DiNq9C> (1심 판결문)

<https://bit.ly/2v8CpmN> (2심 판결문)

뉴질랜드**음악 산업계, 뉴질랜드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을 촉구하다****유현우**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뉴질랜드 음악 무역협회 회장 Damian Vaughan은 2019년 3월 뉴질랜드의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유럽의 저작권법 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동 성명서에서 Damian Vaughan은 특히 자국의 예술가 등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와 함께 ISP 등의 인터넷 회사에 대한 ‘면책(safe harbor) 조항’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였음. 현재 뉴질랜드 음악 무역협회는 4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1994년 뉴질랜드 저작권법의 검토를 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제출 작업을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음반 산업은 애플 뮤직과 스포티파이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스트리밍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디지털 다운로드의 매출이 2017년 8,200만 달러에서 2018년 5,200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되는 등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2018년 총 매출액이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대에 힘입어 2017년에 비해 7.7% 증가한 1억 790만 달러를 기록하고 음반 시장이 4년 연속 성장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도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4.2 저작권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 뉴질랜드 음악 무역협회(New Zealand music trade association)의 회장 Damian Vaughan은 2019년 3월 뉴질랜드의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뉴질랜드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
- 이와 함께 Damian Vaughan은 최근의 유럽에서의 저작권법 개혁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하였음.

- 현재 뉴질랜드 음악 무역협회는 4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1994년 뉴질랜드 저작권법^{<1>}의 검토(review of the Copyright Act 1994)를 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제출 작업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
- Damian Vaughan은 “우리 협회는 뉴질랜드 정부가 자국 예술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자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뉴질랜드 고유의 정체성(unique New Zealand identity)을 유지함과 동시에 전 세계를 무대로 문화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건(right conditions)을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함.
- 또한 Damian Vaughan은 뉴질랜드 음악 무역협회의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한 가지 이슈가 인터넷 회사의 고객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했을 때 인터넷 회사가 ‘통지 후 삭제(notice & take down)’와 같은 일정한 조치를 이행하면 고객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면책(safe harbor) 조항’에 관한 것 이라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촉구함.

뉴질랜드의 음악 산업 현황

-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 음반 산업(recorded music industry)

<1> 뉴질랜드의 현행 저작권법은 1994년에 제정된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994)이지만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전송 및 신기술을 이용한 저작물의 이용 등 디지털 시대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8년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였음. 박성진, “[뉴질랜드] 정부, 현행 저작권법과 디지털기술 환경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다”, 「저작권동향」 2017-1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

<2> 이미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저작권 법제 구축을 위한 저작권법 개혁 내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수의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뉴질랜드의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뉴질랜드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합치되는 방향으로의 저작권 법제 구축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은 2018년 4년 연속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매출액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대에 힘입어 2017년에 비해 7.7% 증가한 1억 79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8년 한 해 스트리밍 서비스로 거둬들인 수익은 전체 음반 수입의 69%에 해당하는 7,420만 달러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애플 뮤직과 스포티파이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2스트리밍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디지털 다운로드 매출은 2017년 8,200만 달러에서 작년에 5,200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되는 등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공연 및 방송을 통한 수익은 1,480만 달러로 변동이 없었으며 음반에 대한 물리적 구매(physical purchasing) 즉, 오프라인을 통한 음반 구매는 2017년 1,450만 달러에서 작년도 1,130만 달러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평가 및 전망

- Damian Vaughan은 뉴질랜드 음악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아티스트들의 창작 욕구를 고취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아티스트들을 지원함과 동시에 그들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뉴질랜드 정부가 현재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음악 산업계의 목소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법제 구축을 위한 뉴질랜드 정부의 노력이 과연 뉴질랜드 음악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생각됨.

 **참고 자료**

<https://bit.ly/2JZz5Vr>

<https://bit.ly/2OEten8>

<https://bit.ly/2TQ6vW0>